

의안번호	제 165 호
의결 연월일	2015. 4. . (제 339 회)

**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
일부개정조례안**

발의자	장선배 의원 등 7명
발의연월일	2015년 4월 13일

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장선배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5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5년 4월 13일

발의자 : 장선배, 박봉순, 박한범
박종규, 임병운, 최병윤
이숙애

1. 개정이유

- 가. 기금 증식을 위해 매년 이자의 20% 이상을 재적립하도록 명시한 조항을 삭제하여 기금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함.
- 나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자 함.
- 다.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라 용어 및 문구를 수정하여 일반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매년 이자의 20%이상 기금 재적립 조항 삭제(안 제4조)
- 나. 알법정비기준에 따라,
 - “해촉”을 “위촉해제”로 수정(안 제5조)
 -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수정(안 제5, 8조)
- 다. 같은 의미가 반복된 “구체적인 세부사항”을 “구체적인 사항”으로 수정(안 제10조)
- 라.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자로 규정(안 제11조)

3. 개정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협의 :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협의

라. 입법예고 : 해당 없음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에 따라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”으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기금의 조성)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의 출연금
2.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
3. 중앙정부의 보조금
4. 기금의 운용수익금
5. 그 밖의 수입금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V호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여유자금은「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여유자금은「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7조에 따라”로 하고,

같은 조 제2항 중 “당해연도”을 “해당 연도”로, “지출 하되, 기금 증식을 위하여 매년 이자의 20퍼센트 이상을 재적립하여야 한다”를

“지출한다” 로 하며,
같은 조 제3항 중 “이 기금” 을 “기금” 으로, “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
이 정하는 제규정” 을 “충청북도 재무회계규칙” 으로 한다.

제5조제2항제4호 중 “기타” 를 “그 밖에” 로 한다.

제5조의2제3항 중 “해촉될” 을 “위촉 해제될” 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도지사” 를 “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 라 한
다)” 로 하고, “출납폐쇄후 80일 이내” 를 “출납 ∨ 폐쇄 ∨ 후 80일 ∨ 이내”
로 하며,

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
고서를 매 회계연도” 를 “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
서를 매 ∨ 회계연도” 로 한다.

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” 을 “제3조제2
호에 따른” 으로, “각호” 를 “각 ∨ 호” 로 하고,
같은 조 제4호 중 “기타” 를 “그 밖의” 로 한다.

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” 을 “제3조제3
호에 따른” 으로, “각호” 를 “각 ∨ 호” 로 하고,
같은 조 제4호 중 “기타” 를 “그 밖의” 로 한다.

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” 을 “제3
조제4호에 따른” 으로, “있는 자” 를 “있는 사람” 으로 하고,
같은 항 제3호 중 “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” 을 “제3조
에 따른” 으로 하며,

같은 조 제2항 중 “범위내” 를 “범위V내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후 단 중 “세부사항” 을 “사항” 으로 하며,
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” 를 “제3항에 따라” 로, “때에는” 을 “경우” 로 하고,
같은 조 제5항 중 “각호” 를 “각V호” 로 한다.

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,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.

제11조(기금의 존속기한)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도민의 사회복지증진과 장학 및 재해구호사업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에 따라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기금의 조성)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도의 출연금</u> 2. <u>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</u> 3. <u>중앙정부의 보조금</u> 4. <u>기금의 운용수익금</u> 5. <u>기타 수입금</u> 	<p>제2조(기금의 조성)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의 출연금</u> 2. <u>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</u> 3. <u>중앙정부의 보조금</u> 4. <u>기금의 운용수익금</u> 5. <u>그 밖의 수입금</u>
<p>제3조(기금의 용도)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<u>각호</u>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4. (생략) 	<p>제3조(기금의 용도) ----- ----- <u>각V호</u>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4. (현행과 같음)

제4조(기금의 관리.운용) ① 기금은 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, 여유자금은 「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하며, 제3조의 용도별로 계정을 구분하여 관리·운용한다.

② 기금의 사용은 재해구호사업을 제외하고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 하되, 기금증식을 위하여 매년 이자의 20퍼센트 이상을 재적립하여야 한다.

③ 이 기금의 출납에 관하여는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제규정을 준용한다.

제4조(기금의 관리.운용) ① -----

----- 여유자금은 「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7조에 따라-----

-----.

② -----
----- 해당 연도-----
----- 지출한다.

③ 기금-----
----- 충청북도 재무회계규칙-----
-----.

제5조(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·운영) ① (생략)

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1. ~ 3. (생략)

4. 기타 기금운용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

제5조(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·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그 밖에 -----

<p>제5조의2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<u>해촉</u>될 수 있다.</p>	<p>제5조의2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위 <u>촉</u> 해제될 -----.</p>
<p>제6조(결산 및 보고) ① <u>도지사</u>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<u>출납폐쇄후 80일 이내</u>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</p> <p>② 도지사는 <u>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연도</u> 마다 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제6조(결산 및 보고) ① <u>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</u>- -----<u>출납</u> ∨ <u>폐쇄</u> ∨ <u>후 80일</u> ∨ <u>이내</u>에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<u>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</u> ∨ <u>회계연도</u>----- -----.</p>
<p>제8조(노인복지지원사업) <u>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사업의 세부지원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u>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<u>기타</u>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</p>	<p>제8조(노인복지지원사업) <u>제3조제2호에 따른</u>----- ----- ----- <u>각</u> ∨ <u>호</u>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그 밖의</u> ----- -----</p>

<p>제9조(장애인복지지원사업) <u>제3조 제3호의 규정</u>에 의한 장애인복지사업의 세부지원 내용은 다음 <u>각호</u>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3. (생략) 4. <u>기타</u> 장애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	<p>제9조(장애인복지지원사업) <u>제3조 제3호에 따른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각 호</u>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<u>그 밖의</u> ----- <p>-----</p>
<p>제10조(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원사업) ① <u>제3조제4호의 규정</u>에 의한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<u>자의 자격</u>은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· 2. (생략) 3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 및 제5조, 같은 법 시행규칙 <u>제3조의 규정</u>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·고등학교 학생 ② 장학생의 인원 및 지급액은 기금운용의 수익금을 감안하여 예산의 <u>범위내에서</u> 도지사가 정한다. ③ 이 조례에 의한 장학생의 선발은 시장·군수가 추천한 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선발 하되 선발요령 등 구체적인 <u>세부사항</u>은 지침으로 정한다. 	<p>제10조(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원사업) ① <u>제3조제4호에 따른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있는 사람</u>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·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<p>-----</p> <p>- <u>제3조에 따른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범위 V 내에서</u>-----</p> <p>-----.</p> <p>③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사항</u>-----.</p>

<p>④ <u>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</u>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⑤ 제4항 <u>각호</u>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지급된 장학금은 회수하지 아니한다.</p>	<p>④ <u>제3항에 따라</u>----- ----- ----- 경우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----- <u>각호</u>----- ----- -----.</p>
<p><신설></p>	<p><u>제11조(기금의 존속기한)</u>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.</p>
<p><u>제11조(시행규칙)</u> (생략)</p>	<p><u>제12조(시행규칙)</u> (현행과 같음)</p>

관계법령 발췌

□ 재해구호법

제14조(재해구호기금의 적립 등) ① 시·도지사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구호비용을 부담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.

② 재해구호기금은 이재민의 구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.

③ 재해구호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.

□ 지방자치법

제142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③ 제1항에서 “재산“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.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

제3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원 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.

②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